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8.

의안 번호	463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1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0. 18.)
  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장원석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(안 제3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

- 제105조(체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**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**로 인정될 경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　　타

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7.30. ~ 2021.8.20.) 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 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「지방세법」 제74조 등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사업자・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었는 바

- 특별시세인 주민세 5개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[1]하고, ‘재산분’의 명칭을 “사업소분”으로 변경, 과세근거를 명확화한 것으로 보임.

개정 전	개정 후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**제74조(정의)** ----------.
1. “균등분”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	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2. **“재산분”**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	2. **“사업소분”**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----------.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	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----------.

○ 즉, 균등분,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,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,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・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・통합하여 규정한 것임.

---

1) 균등분(개인 · 개인사업자 · 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→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

현 행(주민세)				개 정(주민세)		
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		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 內		개인분(8월)	<좌 동>	
	개인사업자	5만원	⇨ 개정	사업소분 (8월)	사업자	◦ 모든 사업자: 기본세액(5만원*) ◦ 연면적 330㎡ 초과: 기본세액+250원/㎡
	법인	5~50만원				
재산분 (7월)	사업자	연면적 330㎡초과 250원/㎡				
종업원분	사업자	월급여액×0.5%		종업원분	<좌 동>	

○ 한편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실납부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

- 안 제3조(체납체분 유예 대상자인 성신납부자) 규정 중 성실납부자 대상에 '주민세 재산분' 규정이 있는 바 이를 개정된 '주민세 사업소분' 으로 개정하지 않고 삭제하려는 것은 종전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 세목까지 사업소분에 포함되어 성실납부자의 대상이 주민세(재산분) 9,470건에서 주민세(사업소분) 96,056건으로 무려 914% 증가하여 과도하게 성실납부자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(단위 : 건, 백만원)

현 행				개 정		
구분	건수	금액		구분	건수	금액
계	96,056	8,455	⇨ 개정	주민세 (사업소분)	96,056	8,455
주민세 (개인사업자)	41,199	2,070				
주민세 (법인사업자)	45,387	2,827				
주민세 (재산분)	9,470	3,558				

<자료: 2020.12. 징수기준>

- 안 부칙 제2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)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경우 성실납부자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63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1.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제 출 부 서 : 세무관리과

1. 제안이유

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함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(체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**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**로 인정될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

(2) 입법예고(2021. 07. 30. ~ 2021. 08. 20.) :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”를 “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	제3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1항의 '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'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김지훈(02-3423-5602)